

제331회 송파구의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이륜자동차 불법주정차 단속체계 개선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정비 촉구 건의안
검 토 보 고 서



- 의안번호: 제427호
- 발 의 자: 최상진 의원
- 소 관: 송파구의의회 도시건설위원회
- 심 사 일: 2026. 5. 8.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륜자동차 불법주정차 단속체계 개선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정비 촉구 건의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427호로 2026년 4월 27일 최상진 의원이 발의하여 2026년 4월 28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2조는 모든 차의 운전자에게 일정 장소에서의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2조 및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륜자동차 역시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므로 불법주정차 금지 대상임.
- 「도로교통법」 제143조, 제160조제3항 및 제161조제1항제3호는 이륜자동차 불법주정차에 대하여 운전자 특정 시에는 경찰의 범칙금 처분, 운전자 미확인 시에는 시장등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법적 구조를 두고 있음.
- 현재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는 이륜자동차등 항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집행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륜자동차 불법주정차에 대한 일반 과태료 부과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으로 이어져 단속 사각지대가 초래되고 있음. 이에 해석상 집행 혼선을 해소하고 주민의 보행권과 생활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건의안을 제안함.

3. 참고사항

- 관계 법령 : 「도로교통법」 제32조, 제160조제3항, 제161조제1항제3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및 별표 6

4. 이송처

- 경찰청,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5. 검토의견 (전문위원 손지훈)

- 본 건의안은 2026년 4월 27일 최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의안번호 제427호로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최근 도심과 주거지역에 이륜자동차의 불법주정차로 인한 주민불편과 이에 따른 민원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상위법령인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이륜자동차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여 정비해 줄 것을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검토

가. 이륜자동차 불법주정차 현황 및 건의안 제안 배경

- 사회 및 교통여건의 변화, 경제활동의 다양화로 인해 이륜자동차의 이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1인 가구 증가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소비 트렌드가 자리잡게 됨에 따라 배달 수요는 폭발하며 이륜자동차를 활용한 퀵 커머스¹⁾ 배달서비스(실시간 배송)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의

자료를 따르면, 2022년에 접수된 이륜자동차 주정차 위반 신고 건수는 2018년 2,397건에서 30.6배 증가한 7만 3,294건을 기록하는 등 도심 속 골목 주변엔 불법 주·정차된 이륜자동차로 인해 보행로 및 차량의 통행을 방해는 물론 안전사고 문제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 지난 10여 년간 이륜자동차 불법주정차에 따른 주민 불편 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지역 사회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송파구의 경우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상 이륜자동차의 무분별한 보도 점유 및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권 침해와 교통 흐름 방해 민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륜자동차 주정차 단속의 실효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2019년 서울시는 종로3가부터 청계3가까지 약 4.6km에 달하는 구간에 총 60명을 투입하여 하루 동안 100건²⁾ 이상 단속을 적발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였으나, 법적·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단속 결과가 실제 범칙금 부과로 직결되지 못한 현행 「도로교통법」 상의 권한 분리는 행정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단속의 연속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및 송파구 민원접수 내역】

연번	민원 접수 내용
1	(소통24-서울시) 이륜자동차 불법주정차 단속 즉시 시행 요구- 등록일 2017.12.1. 오○○ ▶서울시 및 산하 구청은 이륜자동차 단속 근거 미비를 이유로 주차단속을 하고 있지 않음. ▶서울시는 주차단속 관련 지침 개정 바람

1) 퀵 커머스(Quick commerce): 고객이 주문한 물품을 15분에서 1시간 이내에 배송해 주는 서비스, 도심의 여러 물류 센터에 식료품이나 생필품 따위를 보관해 두고 주문이 들어오면 배송 기사에게 즉시 전달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단축한다. - 출처: 국립국어원

2) "불법주차 오토바이 수백대 몰려 '365일 아수라장' 동대문시장 불법 단속 동행해 보니", 조선일보, 2019-09-21.기사 일부 발췌

연번	민원 접수 내용
2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이륜차 상습 불법주차 단속의 실효성 부족 문제 개선 요청 :반복 위반 시 범칙금 부과 및 제도 개선 필요 - 등록일 2025.7.1. ▶ 이륜차가 동일 장소에서 상습적으로 불법 주차를 하여 도로 통행과 사유지 주차에 큰 불편 초래 ▶ 이륜차에 대한 단속 미비로 실질적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문제점 지적 및 현장 단속 기준 요건 현실적으로 조정해 주기 바람
3	(소통구청장실-송파구) 오토바이 및 장애인 전동 휠체어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통행 방해 - 등록일 2022.9.25. 김○○ ▶ 도로모퉁이 3m이내 오토바이 및 장애인 전동 휠체어 정차로 인해 통행 불편 개선
4	(소통구청장실-송파구) 석촌호수와 석촌고분 사이의 길 안전 관련 제안 - 등록일 2024.4.30. 이○○ ▶ 석촌호수로18길 주변 많은 차량과 오토바이 불법주정차 문제 해결
5	(소통구청장실-송파구) 위례중앙로 인도상 주차차량 단속 바람 - 등록일 2026.4.1. 이○○ ▶ 위례중앙로 트램길 주변 배달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로 인한 통행 불편상황 단속과 계도 바람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경찰청에서도 각 지방자치단체에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위하여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전 이륜차 주차 인프라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³⁾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도로에 방치된 이륜자동차에 대한 조치 민원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할 것을 의결⁴⁾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정비를 통해 실질적인 이륜자동차의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 체계의 개선을 촉구하는 본 건의안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나.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의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의 필요성

- 이륜자동차 불법 주정차 문제는 단순히 불법적인 행위에 그치지 않고,

3) "오토바이 불법주차, 운전자 없어도 과태료" 법 개정 검토, 중앙일보, 2024-06-07 기사 일부 발췌

4) 국민권익위원회, "도로에 방치된 이륜자동차 조치 요청" 의안번호 제2025-5소위 05-경02호

도심의 좁은 골목이나 보행로의 통행을 방해하고, 차량의 이동을 어렵게 만들어 교통 흐름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 주·정차된 이륜자동차 사이를 지나야 하는 상황에서 보행자가 넘어지거나, 도로에 주차된 이륜자동차를 피하려다 인도를 벗어나 사고를 당하는 등 각종 안전 사고의 위험 발생이 존재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불편 사항에 대한 민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서울시 및 자치구에 불법 주·정차된 이륜자동차의 단속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는 이륜자동차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으며, 이륜자동차가 불법 주·정차 된 경우 경찰만이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어 현장에서 경찰이 단속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이륜자동차 불법 주·정차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제5소위원회 2025. 2. 10. 의결)에서는 장기 방치된 이륜차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5)에 따른 이동 명령을 실시해야 하며,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정비하여 단속

5)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① 자동차(자동차와 유사한 외관 형태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8. 27.>

1.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방치하는 행위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 요청이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그 자동차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 또는 폐차에 든 비용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동차를 매각 또는 폐차한 경우 그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잔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잔액을 공탁(供託)하여야 한다.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을 권고받은 바 있습니다. 서울시 역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6)를 통해 장기간 주·정차한 이륜자동차의 견인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법」 제28조7)에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는 이륜자동차의 견인 또한 상위법의 위임 규정의 부존재로 인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 불법주정차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32조8)에 따라 처벌할 수 있으나,

6)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소요비용의 산정) 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비용 중 차량의 이동에 드는 비용은 견인료, 차량의 보관에 드는 비용은 보관료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견인료 및 보관료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소요비용 산정기준 (일부 발췌)

구분	견인료	보관료
이륜자동차	40,000원	30분당 700원(승합자동차중 중형과 대형은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7)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8)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8.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이륜자동차는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어 범칙금 부과만 가능하며, 범칙금은 현장에서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직접 발부해야 하므로 소유자나 점유자가 현장에 없는 경우 범칙금 발부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의 과태료 부과 기준 중 제6호에서는 「도로교통법」 제32조를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한 차의 고용주에 대한 과태료 금액에 승합·승용자동차에 대한 금액만 있을 뿐, 이륜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금액은 부재합니다. 이러한 입법적 공백은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저해하여 범법 행위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보도에 방치된 이륜자동차로 인한 보행자 안전 위협은 물론 차종 간 교통 법규 위반 단속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우려되는 바, 관련 법령의 정비는 필요하다고 판단 됩니다.

다. 종합 검토 의견

- 본 건의안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이륜자동차의 불법주정차 제재 방안 중 하나인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려는 것으로, 건의안의 목적 및 내용 또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또한 이륜자동차의 불법주정차 문제는 비단 송파구나 서울시의 일부 자치구에만 국한된 사안이 아닌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공통된 사회 문제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경찰청 및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륜자동차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된 법령의 제도적 시각지대를 해소하고,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관리 방안 및 단속 가이드라인수립을 통해 보행자와 이륜자동차 운전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